법무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29.(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신설

□ 법무부는 지난 8. 13.(화)「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합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35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

○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입니다.

○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입니다.

○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시간(3시간→5시간)을 늘리는 등 이민자 관련 안전교육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기초법·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운영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제1지원단)과 한국이민재단(제2지원단)이 있음

○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증가 수요에 부응하고 참여자의 책임성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재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하며, 특히 이민자 사회통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경제, 소방안전, 교통안전, 마약예방 등 다양한 시민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책임자	과 장	김기락 (02-2110-4140)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02-2110-4146)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요

1 개요 및 법적 근거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4. 7. 기준 전국 335곳)

3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100시간)으로 구성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4 참여자 현황

○ '09년~ '24. 7월까지 총 496,013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

(단위 :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7.
참여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	**49,568**

붙임 2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1 개념 및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등 18개 언어로 교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영주자격·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2 참여 대상

○ **(의무)**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필요

○ **(자율)**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난민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인이 7천명 이상인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무관)

3 교육 과정

○ **(공통과목)** 기초 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2시간)

○ **(특수과목)**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내용*(1시간)

* 외국인 유학생(유학생 필수정보),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중도입국 청소년(미래 진로),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 필수정보), 외국인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재정착난민(국내정착)

4 운영 실적

(단위: 명, 회)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참여 인원	47,845	60,358	91,938	79,656	51,354	6,620	7,237	29,552	42,374
교육 횟수	1,840	2,245	2,735	2,736	2,116	638	803	1,745	2,025